

인천지방법원 2021. 7. 13 선고 2020나679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1. 7. 13 선고 2020나67929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0. 7. 16 선고 2019가단21258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인천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

피고, 항소인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 2021. 6. 1.

판결 선고 2021. 7. 13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. 7. 16. 선고 2019가단212586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 주식회사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,866,535원 및 그중 13,437,853원에 대한 2019.

2. 28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1) 피고 B, C 사이에 2017. 9. 6.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
2)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. 9. 6. 접수 제3310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다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1) 피고 B, C 사이에 2018. 3. 2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2)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8. 3. 26. 접수 제110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피고 A, B: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나. 피고 C: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피고 B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

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일부 수정하는 부분

가.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제9행의 '[인정근거]'부분을 '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제8, 9호증, 제10호증의 1, 2,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'로 고치고, 밑에서 제6행의 '피고 회사, B는' 다음에 '연대하여'를 추가한다.

나.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"가. 피보전채권의 발생

살피건대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일(2017. 9. 6.)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일(2018. 3. 26.) 후인 2019. 1. 24. 성립하였으나,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,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피고 회사는 2016. 7. 27.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,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점, 그 후 피고 회사가 2017. 9.경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난을 겪던 중 피고 B는 2017. 9. 6. 조카인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재산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아래 적극재산 내역표 순번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, 다시 2018. 3. 26.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, 이후 피고 회사는 2018. 10.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9. 1. 24.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잔액을 대위변제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보증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보증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"

다.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'판단하여야 한다.' 다음에 "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,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,

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.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,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,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,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.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,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(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). 또한,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(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)."를 추가한다.

라.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(가)항과 제7면 밑에서 6행의 (나)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"(가) 적극재산 합계 224,945,500원

1	인천 남동구 F 대 165.5m ²	100,112,000원1) 부동산 가액 665,112,000원 -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565,000,000원
2	인천 남동구 G 대 145.3m ²	
3	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중 1/2 지분	12,400,000원2) 부동산 가액 40,000,000원 -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7,600,000원(피고 B와 L은 위 부동산 I호 중 각 1/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 무렵 위 각 지분의 가액은 각 40,000,000원이었는데, 위 부동산 I호 전부에는 채무자를 L, 근저당권자를 M조합, 채권최고액을 67,6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는 L이 주채무자, 피고 B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, 위 피담보채무액

1	인천 남동구 F 대 165.5m ²	100,112,000원1) 부동산 가액 665,112,000원 -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565,000,000원
		중 L이 소유한 지분이 부담하는 금액은 40,000,000원이고, 피고 B가 소유한 지분이 부담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한 27,600,000원이다)
4	이 사건 ① 부동산	27,000,000원3) 부동산 가액 76,000,000원 -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49,000,000원
5	이 사건 ② 부동산	53,000,000원4) 부동산 가액 153,000,000원 -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,000,000원
6	인천 남동구 J도로 14.4m ² 중 1/2 지분	32,433,500원
7	인천 남동구 K 도로 23m ² 중 1/2 지분	
합계	224,945,500원	

(나) 소극재산 합계 111,437,853원"

1	○조합에 대한 차용금채무	6,000,000원
2	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보증금채무	13,437,853원
3	P, Q에 대한 약정금채무	70,000,000원
4	R에 대한 공사대금채무	22,000,000원
합계	111,437,853원	

마. 제1심판결 제8면 밑에서 제9행의 '적극재산'부터 밑에서 제7행의 '6,000,000원'까지 부분을 '적극재산 44,833,500원(12,400,000원 + 32,433,500원) < 소극재산 111,437,853원'으로 고친다.

3.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

가. 한편, 피고 B는 자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적극재산 외에도 T에 대한 134,700,000원의 채권이 있고 위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얻었으므로,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채권도 자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상대방은 그 수익자인 피고 C이지 피고 B가

아니므로(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), 피고 C이 이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 B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. 다. 그리고 피고 B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, 을나 제3, 6,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7. 9. 26.자 확인서에 기하여 T에 대해 134,700,000원의 약정금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21. 4. 9.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, 위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일인 2017. 9. 6. 후인 2017. 9. 26.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, 다만 그 후 채무자 B가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(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), T의 변제자력 등 T에 대한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B가 가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.

라.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회사,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송각엽

판사현선헤

판사백규재

별지

- 1) 부동산 가액 665,112,000원 -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565,000,000원
- 2) 부동산 가액 40,000,000원 -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7,600,000원(피고 B와 L은 위 부동산 I호 중 각 1/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 무렵 위 각 지분의 가액은 각

40,000,000원이었는데, 위 부동산 I호 전부에는 채무자를 L, 근저당권자를 M조합, 채권최고액을 67,6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는 L이 주채무자, 피고 B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, 위 피담보채무액 중 L이 소유한 지분이 부담하는 금액은 40,000,000원이고, 피고 B가 소유한 지분이 부담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한 27,600,000원이다)

3) 부동산 가액 76,000,000원 -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49,000,000원

4) 부동산 가액 153,000,000원 -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,000,000원